

「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

방송통신위원회

법 제 처 심 사 전

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(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) ① 진흥회는 당해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진흥회가 법 제15조의2제1호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.
- ③ 진흥회가 법 제15조의2제2호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과 일자, 대상인원,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
- ④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(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) ①</u> <u>진흥회는 당해 분기 종료 후 30</u> <u>일 이내에 법 제15조의2 각 호</u> <u>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</u> <u>야 한다.</u> <u>②</u> <u>진흥회가 법 제15조의2제1호</u> <u>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</u> <u>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</u> <u>도로 구분하여야 한다.</u> <u>③</u> <u>진흥회가 법 제15조의2제2호</u> <u>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</u> <u>집행목적과 일자, 대상인원, 집</u> <u>행금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야</u> <u>한다.</u> <u>④</u> <u>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개하</u> <u>여야 하는 사항에서 「개인정보</u> <u>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</u> <u>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</u> <u>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	
연 락 처	(02) 2110 - 1415